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외동포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 (○○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재외동포기본법」 개정(2026.5.19.)으로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평가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,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 예정(2026.10.1.) 예정임에 따라 재외동포 인재유치사업의 재외동포청 직접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 수행 근거 마련 및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규정(안 제2조)
- 나.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의 평가결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(안 제4조)
- 다.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근거 규정(안 6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~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

2.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

② 제1항제2호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, 지원 기준,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

제2조(재외동포 지원)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 대상 장학금 지급, 교육, 연수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

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, 지원 기준,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재외동포청장 및 관계”를 “관계”로, “매년”을 “ 재외동포 청장에게 제출하고,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실무위원회 상정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(재외동포 지원) 재외동포청</u> <u>장은 법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</u> <u>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대한</u> <u>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</u> <u>전을 위한 재외동포 대상 장학</u> <u>금 지급, 교육, 연수지원 등 필</u> <u>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 지원 대상, 지원 기준,</u> <u>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 <u>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</u>
<u>제2조(재외동포정책) 「재외동포</u> <u>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<u>제2조제2호차목에서 “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</u> <u>요 정책”이란 재외동포를 위한</u> <u>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</u> <u>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</u> <u>을 말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재외동포정책) ① 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. <u>1.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</u> <u>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</u> <u>원서비스에 관한 정책</u> <u>2.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</u> <u>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</u> <u>외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</u>

<u><신 설></u>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 등) ①·② (생략) ③ <u>재외동포청장 및 관계</u>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<u>매년 2월 말일까지</u>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제6조(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<u>제1항제2호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, 지원 기준,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</u>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관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,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</u> -----. 제6조(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실무위원회 상정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
연 락 처	(032) 585 - 3156